

1. 적용 대상자

- 영세올사업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상호면세주인에 따름
- 영세올은 관세사업자(간이관세자 포함)에 한하나, 면세사업자의 경우도 면세포기(영세올 적용분에 한 함) 시 영세올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영세올 적용 대상거래

구분	내용
① 수출하는 재 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물품(국내선박에 의해 체포된 수산물 포함)의 외국반출*1(대행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올을 적용, 수출업자의 수출대행수수료는 10% 부가세 과세)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환*2 (금지금은 제외)(내국신용장 등이 공급시기 이후에 개설되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영세올을 적용) ●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기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환을 외국으로 무상 반출·공급하는 재환

*1. 무상수출도 해당(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환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환은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환이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영세올을 적용한다

구분	내용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해외 건설용역 등)
③ 선박·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포함)

구분	내용
④ 기타 외환 획득 재화·용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 ● 외국을 향해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국인환자유치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국내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국인환자유치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정국내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관련공급, 도시철도건설용역, 농어업 관련공급 및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 반출을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

3. 영세올 첨부서류

영세올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올 대상거래임을 증명하는 수출실적명세서, 외환입금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세올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영세올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올을 적용하지만, 영세올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